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 12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동물복지정책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제24조는 유실·유기동물과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 허용 사유가 넓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예외적 허용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 축소
(안 제23조)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1.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 또는 2. 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 개정하고,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함

나.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1. 개정안 방침 : '19. 12월
2. 관계 부처 협의 : '19. 12월
3. 입법 예고 : '20. 1월
4. 규제 심사 : '20. 2월
5. 법제처 제출 : '20. 2월
6. 공포 : '20. 3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을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확산방지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을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만 경우에만”으로 한다.

2. 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①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는 자는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학교와 다른 학교가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설치·운영하며 법 제26조제1항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부실습의 심의를 하려면 법 제27조 제2항제1호의 수의사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 ----- ----- -----.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u>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u>	1. ----- ----- <u>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확산방지를 위한</u> ----- -----
2. <u>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u>	2. <u>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u>
3. <u>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u>	<u><삭 제></u>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되, <u>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u>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	② ----- ----- ----- ----- ----- <u>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한</u>

으로 본다.

<신 설>

경우에만 -----
-----.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①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는 자는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학교와 다

른 학교가 법 제27조의 요건
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공동으
로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
부실습으로서 다른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에서 설치·운영하며 법 제26
조제1항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으로서 「초·중
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할 수 있다. 다
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부실습
의 심의를 하려면 법 제27조제2
항제1호의 수의사 또는 윤리위
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년) 통보서

(앞쪽)

동물실험	명칭
	주소
시행기관	전화번호
	등록번호
동물실험	명칭
	주소
윤리위원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동물보호법」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물실험시행기관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1. 위원 현황 (총 명)

성 명	전문분야	소속

2. 위원회 개최 횟수 (회)

3. 위원회의 동물실험 실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필요조치 요구 내용을 포함)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다.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4.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승인

심사 건수	승인 건수	변경 승인 건수	미승인 건수

210mm×594mm[백상지(80g/㎡)]

4.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사역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이하 사역동물등)의 실험현황

실험명	윤리위원회 승인번호	동물 종류	마리 수	같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마리 수	사역동물등 공급출처

5.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 사용량

(단위: 마리)

동물 종		정도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합계 (C+D+E)	종별 총계 (B+C+ D+E)
설 치 류	마우스								
	랫드								
	기니피그								
	햄스터류								
	기타								
	설치류								
토끼									
원 숭 이 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 유 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조류	기타								
	포유동물								
	조류(닭)								
기타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

등급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6. 실험동물의 공급출처

(단위: 마리)

정도		동물실험	실험동물	해 외	가축사육	가축시장	공여 ·	자체	기타	종별
동물 종		시설	공급자	수입	업자	경매장	기증	생산		총계
설 치 류	마우스									
	랫드									
	기니피그									
	햄스터류									
	기타									
	설치류									
토끼										
원 숭 이 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 유 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기타									
포유동물										
조류	조류(닭)									
	기타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유의사항

- 항목 1. 의 전문분야의 경우, 수의사, 동물보호전문가, 기타 전문가(세부영역)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항목 3. 의 경우, 가에서 다까지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소수 의견과 미승인 사유를 포함한다)
- 항목 6.의 경우, 동물실험시설은 「실험동물법」 상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을 말하며,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법」 상 실험동물공급자를 말합니다. 자체생산은 같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내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